

#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현황과 과제

변혜정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22-②-2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조세

#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현황과 과제

변혜정

#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현황과 과제

Tax Information Exchange:  
Status and Developments

연구자 :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Byun, Hye Jung

2013. 6. 30.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역외거래가 다양해지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여야 함
  - 이러한 정보교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때 국가들은 자국의 과세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타국과의 과세권 배분도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간 조세협력증진을 위하여 조세정보교환제도의 국제적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II. 주요 내용

-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유형에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동시세무조사, 해외세무조사, 산업별 정보교환 등이 있음
  - 이 중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은 전통적 정보교환으로 분류됨

-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조세와 관련된 국내법의 적용과 세금의 징수 및 집행, 조세조약의 적용에 필요한 예견 가능한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보임
  - 그러나 정보교환 의무는 국내법상 조세정보비밀주의, 상호주의, 공공정책, 영업비밀, 변호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협약에 따르지 않은 정보요청, 차별금지, 국내법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 국제적 정보교환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있음
  -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단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조세피난처와 같이 조세조약 상대국의 세율이 너무 낮거나 세금이 없어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인의 조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되며, 금융정보에 대한 사생활권도 보장되는 것이 원칙임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거주자가 외국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의하여 모든 해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 재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미국인이 보유한 기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

- 미국은 2013년 6월 현재 6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84년 바베이도스와 최초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이후 30여 개국과 지속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음
- 호주의 경우 납세자 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과세관청 내 또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정보교환이 허용되며, 관습법에 의하여 은행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임
- 호주는 2013년 6월 현재 4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중 43개가 발효 중이며,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경우 38개의 OECD 비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31개의 협약이 체결됨
- 네덜란드의 경우 조세정보에 대한 비밀주의가 원칙이나 점차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별도의 비밀보장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네덜란드는 2013년 6월 현재 92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해왔으며, 2005년 맨섬(Isle of Man)과 최초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 29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정보에 대한 비밀주의가 원칙이나 법률상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국내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
- 일정한 경우 법률에서 은행을 포함한 특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계좌신고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현재 8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3개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만이 현재 발효 중에 있음
- 최근 해외재산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관련 협약의 체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체결한 조세조약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법상 규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간 상호주의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

### Ⅲ. 기대효과

- 최근 조세회피행위는 유해한 국제조세경쟁과 조세피난처에 의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음
-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같이 최근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보교환은 조세협력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기도 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한 조세정보교환제도의 국제적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행

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간 조세협력증진방안을 구축하는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주제어 : 조세정보교환, 조세협약, 조세정보교환협정, 정보보호,  
국제협력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ternational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an unprecedented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national economies and countries have increasingly resorted to improved and broadened cooperation in tax matters.
- A key el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is exchange of information.
  - It is an effective way for countries to maintain sovereignty over their own tax bases and to ensure the correct allocation of taxing rights between tax treaty partners.
-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global trends of exchange of information in order to not only combat international tax avoidance but also fortify tax cooperation on which an open world economy depends.

## II. Main Contents

- The forms of information exchange include: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simultaneous tax examinations, visit of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dustry-wide exchange of information.

- Exchange of information covers all informa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axes.
- However the legal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is lifted in a limited number of situations which include: tax secrecy, reciprocity, public policy, trade and business secrets,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instrument pursuant to which it is made, non-discrimination and measures at variance with domestic laws and practices.
- Exchange of information is generally based on the OECD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Model Convention') and the OECD 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Model Agreement').
- Model Convention provides for a framework within which contracting parties can exchange information on request and request, as well as on a spontaneous and an automatic basis.
- Model Agreement is focused on information exchange upon request and does not cover spontaneous 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In the United States, tax information of individuals is not be published but with exceptions and in principle, the privacy of financial information is protected.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requires a citizen who has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to report the account yearly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targeting non-compliance by U.S. taxpayers using foreign accounts, require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o report to the IRS information about financial accounts held by U.S. taxpayers, or by foreign entities in which U.S. taxpayers hold a substantial ownership interest.
- As of June 2013, the United States has concluded income tax conventions with 67 countries and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with 30 countries since with Barbados in 1984.
- In Australia, the disclosure of taxpayer information is prohibited, in principle, but based on the laws, it can be shared within tax authorities and with other national agencies. The common law has recognized bank secrecy.
- As of June 2013, Australia has concluded income tax conventions with 44 countries and information exchanges agreements with 31 countries.
- In the Netherlands, tax secrecy has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principle, but the trend is moving towards transparency. There is no bank secrecy in the Netherlands.
- As of June 2013, the Netherlands has concluded income tax conventions with 92 countries and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with 29 countries since with Isle of Man in 2005.

- In South Korea, tax information is confidential with exceptions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is possible not only based on tax treaties but also on a domestic law.
- Financi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report the government including tax authorities in certain cases and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 System requires resident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o report their foreign account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 As of June 2013, South Korea has concluded income tax conventions with 80 countries and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with 3 countries.
-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threatening revenues, tax transparency and the fight against cross-border tax evasion have been key topics and more countries have entered into more relevant agreements.
- South Korea needs reflect the new revision of Model Convention in their tax treaties and make more efforts to conclude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with tax havens.
- When entering into relevant agreements, the conflict and balance between the information exchange under the agreements and privacy right under domestic laws should be considered and reciprocity should be observed.

### **III. Expected Effect**

- Harmful tax competition and tax haven provide more opportunities

of tax avoidance and improved transparency and cooper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are required.

- Considering exchange of information is a key el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this research will be a stepping stone to prepare measures to combat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and promote cooperation with countries.

👉 **Key Words:** Information Exchange, Income Tax Convention,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Tax Cooperation

# 목 차

요 약 문 .....	5
Abstract .....	11
제 1 장 서 론 .....	19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 .....	21
제 2 장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개요 .....	25
제 1 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유형 .....	25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전통적 유형 .....	25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기타 유형 .....	28
제 2 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과 제한 .....	29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 .....	29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에 대한 제한 .....	33
제 3 절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의 방법 및 제한 .....	39
1.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의 방법 .....	39
2.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에 대한 제한 .....	42
제 4 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46
1.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 .....	47
2.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	52
3. 다자간 협정 .....	57

제 3 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	61
제 1 절 미국의 조세정보교환 .....	61
1. 미국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62
2. 미국이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71
제 2 절 호주의 조세정보교환 .....	76
1. 호주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76
2. 호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82
제 3 절 네덜란드의 조세정보교환 .....	85
1. 네덜란드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85
2. 네덜란드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91
제 4 절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 .....	95
1. 우리나라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95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100
제 4 장 결 론 .....	103
참 고 문 헌 .....	10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화 및 자유화의 영향으로 국가들은 역외투자자와 외환 거래에 대한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해 오고 있다. 역외거래가 다양해지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국가 간 세제(稅制)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유해한 국제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과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의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유해한 국제조세경쟁은 자국의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나타나며, 국제적 자본 이동을 왜곡시키고 각국의 과세기반(tax base)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sup>1)</sup> 한편 조세피난처라 함은 일정한 소득에 대해 조세가 없거나 저율로 과세하는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하고 자산을 은닉함으로써 세수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조세피난처 국가들로 인하여 은닉 자산 및 세수일탈에 관한 통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sup>2)</sup> 이러

---

1) OECD에 의하면 유해한 조세경쟁이라 함은 ① 세금이 없거나 유효세율이 낮고, ② 거주자를 세제혜택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특정세제혜택을 국내시장과 분리하며, ③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④ 과세당국에 의하여 정보접근이 제한되거나 과세당국의 비협조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1998, pp. 25-30.

2) OECD의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은 ① 세금이 없거나 과세가 명목적인지, ② 과세당국에 의하여 정보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불가능한지, ③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④ 실질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1998,



한 유해한 국제조세경쟁과 조세피난처로 인한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들의 영향력은 원칙적으로 자국에 제한되어 있어 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최근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은 조세문제에 대한 협력, 즉 조세협력(tax cooperation)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sup>4)</sup> 세계 경제의 기본원칙으로서 각국은 국제 사회에서 이익을 향유함과 동시에 의무도 부담하여야 하며, 조세협력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기본원칙이 조세 영역에 반영된 것이다.<sup>5)</sup> 조세협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 역외거래를 통한 납세자의 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교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때 국가들은 자국 내 과세기반(tax base)에 대한 과세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세조약

---

pp. 22-24.

- 3)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직접적인 정보교환, 납세자 신고를 통한 정보 접근, 제3자를 통한 정보 취득 등의 방식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최근 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 시킨 사건들로 2002년 리히텐슈타인의 탈세 스캔들과 2008년 스위스 UBS은행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거래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상당 규모의 투자자산을 유치해 왔다. 그러던 중 2002년 1,400여건의 고객정보가 독일 연방정보국으로 유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600여건이 독일 고객의 자료로 확인되었다. 독일 과세당국은 입수한 은행 거래정보에서 수백여건의 탈세 사례와 1,000여명의 연루자를 확인하였고 탈세액이 최대 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스위스 UBS은행 사건에 대하여는 제4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제1절 미국의 조세정보교환 1. 미국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5)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참조.
- 5)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와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1조에서는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보교환이 의무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약 당사국들은 서로 간 과세권을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한 조세정보교환제도의 국제적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간 조세협력 증진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조세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당국들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유해한 국제조세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이러한 OECD의 움직임에 OECD 회원국들은 물론 비회원국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넓혀오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OECD 글로벌포럼(OECD Global Forum Working Group on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이하 ‘글로벌포럼’)’에서는 조세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개별국가에 의한 국내법의 개정 또는 국내법의 적정한 집행을 통한 방안과, 둘째, 양국 또는 다자간에 의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와 같은 정보교환규정을 포함하는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셋째, 글로벌 포럼에 의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심사결과를 연차보고서에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가 국내법을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물론, 국가들이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 투명성 확보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OECD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아보고, 주요국들의 국내법 현황과 함께 주요국들이 체결한 관련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OECD에 의하여 제시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OECD 모델 조세조약(OECD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이하 ‘OECD 모델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OECD 모델 협약(OECD 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이하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약)’은 정보교환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중 대표적인 것이다.<sup>6)</sup> OECD에서는 이외에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에 기반을 둔 내용을 자국이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조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 근거를 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나아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정보교환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

---

6)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 외에도 ‘소득과 자본에 관한 UN 모델 조세조약(United Nations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이하 ‘UN 모델 조세조약)’, ‘유럽평의회-OECD 간 조세행정공조협정(Council of Europe/OECD Convention)’, ‘노르딕 국가 간 공조협정(Nordic Assistance Convention)’, 미주 조세행정센터(Inter-American Centre of Tax Administrations, ‘ICTA’)에 의한 ‘조세정보 모델 협약(Model Agreement of Tax Information)’,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에 의한 ‘조세법 준수에 관한 협조와 상호원조를 위한 모델 협약(Model Agreement on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on Issues of Compliance with Tax Legislation)’ 등과 같이 조세에 관한 행정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국제규범을 비롯하여, 유럽공동체 지침(EC Directive on Mutual Assistance) 중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교환 규정(Regulation No 1798/2003)과 소비세 관련 정보교환 규정(Regulation No 2073/2004), ‘형사 공조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또는 ‘형사 공조를 위한 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 등과 같이 조세법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 공조를 위한 협약 등 정보교환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규범이 나타나고 있다.

약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서 국내법에서 관련 납세자의 정보를 상호주의나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다른 과세당국에 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sup>7)</sup>

이에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교환에 관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관련 국내법과 이들 국가들이 체결한 관련 협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국제적 기준과 주요국들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

7) 일반적으로 정보교환에 관한 둘 이상의 규범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규범들 내에 규범들 간의 우선순위가 함께 규정된다. 여러 개의 규범이 적용 가능한 가운데 국내법에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과세관청이 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관련 상대국과 특정 경우에 적용될 규범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5.

## 제 2 장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개요

국가 간 정보의 교환은 각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상호간 체결된 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일반적 내용들을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규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구성과 운용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제 1 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유형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유형은 크게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동시세무조사, 해외세무조사, 산업별 정보교환 등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은 전통적 정보교환으로 분류된다.<sup>8)</sup>

####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전통적 유형

##### (1)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혐의가 있을 때 상대국의 과세당국이 그 혐의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는 정보요청을 하기 전에 국내 과세절차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일반적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으로는 해외계좌 등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8) OECD 모델조약 주석서 제26-9문단.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7.

각국은 거주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해외조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자동적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은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해당 납세자의 거주지 국가에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대체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들이 거주자증명제도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납세자는 소득발생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지국(residence country)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득발생지국의 과세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은 해당 납세자가 자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때 동시에 그 납세자의 해외원천소득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sup>9)</sup> 자동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예금지침(Savings Directive(2003/48/EC))에 의한 정보교환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 지침에 의하여 유럽연합 일방 회원국에서 타방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자동적으로 그 거주지국인 타방 회원국에 통보된다.<sup>10)</sup>

9)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에서는 1992년 6월 회원국들 간에 교환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그네틱테이프를 이용한 회원국 간의 자동정보교환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동 권고를 기본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전산처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시간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실행에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0) 이후 유럽연합은 포괄적 조세정보의 자동적 교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예금지침(Savings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비회원국인 스위스의 참

## (3) 자발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은 특정조사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해당 국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 정보교환에 의하면 상대국으로부터 별도의 정보교환 요청이 없더라도 거래내용이나 증빙으로 보아 상대국의 거주자에게 탈세 또는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체약 상대국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대체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이 자국 납세자의 국제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sup>11)</sup> 자발적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그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는 재회신 신청이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대국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회신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국이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에서는 거래내용이나 증빙에 의하여 외국 거래상대방의 탈세 또는 조세회피 혐의가 확인된 경우 거래상대국에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sup>12)</sup>

---

여를 주장하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도 은행비밀주의(bank secrecy)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이 발달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중 스위스만이 은행비밀주의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자동적 정보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스위스는 자국에 예치된 비거주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거주지국을 대신해 원천징수하여 해당 세액을 거주지국에 이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11) 이경근·서덕원·김범준,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597쪽.

12)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와 제82조.

##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기타 유형

### (1) 동시세무조사

동시세무조사(simultaneous tax examination)란 둘 이상의 국가가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공통되거나 관련된 이해가 있는 조세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계국들이 각자 자국 내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내용을 상호 교환하여 분석·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시세무조사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이전가격이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sup>13)</sup> 관계국들이 정보교환에 대한 제한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동시세무조사의 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OECD에서는 동시세무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모델 협약을 구상하고 있다.

### (2) 해외세무조사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상대국에 파견하여 상대국 소재 법인 또는 개인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해외세무조사(visit of authorised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은 상대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동시에 자국의 국내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파견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승인할 경우 관련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각 당사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13)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3, 1081쪽.



### (3) 산업별 정보교환

산업별 정보교환(industry-wide exchange of information)은 특정 납세자에 관한 정보교환이 아닌 특정 산업 전체에 대한 정보교환을 의미한다. 산업별 정보교환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대상 산업의 운영방식과 자금조달방식(financing scheme), 가격결정방식, 조세포탈(tax evasion) 경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

## 제 2 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과 제한

###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

#### (1)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조세와 관련된 국내법의 적용(assessment)과 세금의 징수(collection) 및 집행(enforcement), 조세조약의 적용에 필요한 예견 가능한 관련성(foreseeable relevance)이 있는 모든 정보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에 의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탐색조사(fishing expedition)까지 허용하지는 아니한다.<sup>14)</sup> 일부 오래된 조세조약에서는 정보교환의 대상을 조세조약의 적용에 필요한 정보에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 체결되거나 개정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정보의 범위를 이와 같이 넓게 보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교환의 대상 범위를 좁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내법에서는 양 체약국들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당 행위가 구금의 대상이 되는 때에 한하여 정보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15)</sup> 만약 정보

---

14)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9.

15)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에 대한 스위스의 유보(reservation) 사항 참조.

교환 당사국들 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보교환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교환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sup>16)</sup>

정보교환의 범위에 관한 예를 살펴보면, 사용료(royalty)의 경우 거주지국은 원천지국(source country)에 대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sup>17)</sup> 한편 원천지국은 수령인(recipient)이 거주하는 국가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된 원천징수세율이 해당 수령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수령인이 그 국가의 거주자(resident)인지,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 간 또는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 적합한 수익의 배분을 위하여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sup>18)</sup> 특수관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조세조약에서의 특수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sup>19)</sup> 이 외에 일반적으로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sup>20)</sup>

- 개인과 기업의 과세목적상 거주지(fiscal residence)
- 법인의 과세 대상 여부(tax status)
- 원천지국에서의 소득의 성격
- 납세신고(tax return)된 소득과 비용
- 사업 관련 기록(business record)

---

16)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p. 13-14.

17) 사용료에 대하여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참조.

18)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9조, 제23A조, 제23B조 참조.

19) OECD 모델 조세조약 제9조 참조.

20)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10.

- 기업 설립 관련 서류와 주주 또는 지분소유자의 변경사항을 보여주는 서류
- 특정 기업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기업의 수
- 특정 기업의 이사(director), 관리자(manager), 고용인(employee)의 이름과 주소, 임금 및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payment)에 대한 증거, 이들의 다른 기업에서의 직위에 관한 정보 등
- 은행 계좌 정보(banking record)
- 회계장부(accounting record)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 송장(invoice)과 상사 계약서(commercial contract)
- 양 당사국에서의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의 상품의 가격
- 3개국이 관련되는 소위 ‘삼각관계(triangular situation)’에 관한 정보<sup>21)</sup>
- 이전가격(transfer price) 조사에 필요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납세자 간의 일반적 가격
- 납세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은 통계나 특정 산업에 대한 정보
- 탈세(tax evasion) 경향
- 행정적 해석 및 관행에 관한 정보

##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대상자의 범위

정보교환은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관한 정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sup>22)</sup> 예를 들어 제3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때에 이 자는 그 일방체약국의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타방체약국이 이와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21) 이 경우 조약 체결당사국 간 제3국에 위치한 다른 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1문단, 제1조 제3문단, 제2조 참조.

할 수 있으며, 이 때 타방 체약국은 해당 납세자의 정보를 일방 체약국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제3국의 거주자가 양 체약당사국 어느 쪽에서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자에 관한 정보가 일방 체약국의 납세자 또는 거주자와 관련되어 그 자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방 체약국은 물론 타방 체약국도 해당 제3국 거주자에 대한 조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 정보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는 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닌 그 자가 거주하는 제3국에 대하여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sup>23)</sup>

### (3)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대상 세목의 범위

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세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과 OECD 모델 조세조약이 각기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해당 협정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목의 적용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반면에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해당 조약 제2조에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목 이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보교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양 당사국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목에 대한 정보를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게 요구할 때 이를 따를 필요가 없지만, 조세조약을 체결한 양 당사국 간에는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게 해당 조약의 적용대상 이외의 세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

23) 이러한 취지는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2조에 나타나 있다. 다음은 제3국 거주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의 예이다. A국의 거주자인 A은행이 B국과 C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A은행의 영업은 A국과 B국, C국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B국의 과세당국은 A은행의 B국 지점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C국에게 A은행의 C국에 있는 지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4)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2조 참조.

##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대상에 대한 제한

정보교환 의무는 일정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sup>25)</sup> 원칙적으로 정보제공 여부는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정보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국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조세조약 등 국제협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가 영업비밀(trade secret)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은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조세조약상의 비밀유지의무뿐만 아니라 정보 요청국의 법과 관행에 의한 비밀보장원칙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는 상대국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특별한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아래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정보제공이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조세정보비밀주의

일반적으로 국내법에서는 납세자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tax secrecy)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관련 정보의 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는 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에서도 이를 제공한 국가에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sup>26)</sup> 한편 이와 같이 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에서도 해당 정보가 정보교환규정과 관련 국내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요청 받은 국가는 납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이유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25) 정보교환 의무의 예외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의 제3문과 제4문, 제5문과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26)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2문단과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8조 참조.

## (2) 상호주의

정보교환에 있어서 상호주의(reciprocity)란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정보 수집 및 제공의무는 해당 정보를 요청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집이 가능하였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는 해당 정보를 요청한 국가가 자국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하여 얻지 못하였을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정보 요청국이 요청 상대국의 정보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자국 내에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sup>27)</sup> 따라서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는 정보 요청국의 국내법이 해당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고 있거나 요청국의 행정절차가 상호주의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sup>28)</sup>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일방 당사국이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호주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하여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정보 요청국이 정보를 요청할 때 상호주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가 해당 확인서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반면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서면을 요구하지 아니

---

27)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3문단.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1문단.

28)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15-15.2문단 및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주석서 제72-74문단 참조.

29)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 제5조 제5문단.

한다. 다만 일방 체약국의 국내법이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정보 요청시마다 상호주의 확인을 위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과세당국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3) 공공정책 또는 공공질서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요청 받은 정보가 그 국가의 기밀과 관계된 것이라면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인종적 또는 정치적 박해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공공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해당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정보교환이 공공정책 또는 공공질서(ordre public)를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4) 영업비밀

OECD 모델 조세조약과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특정 정보의 제공이 영업(trade), 사업(business), 산업(industry), 상업(commercial), 직업(professional)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이러한 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회계장부를 포함한 재무정보의 경우 그 성격상 영업이나 사업상 비밀이 될 수 없다.

30) OECD 모델 조세조약 제6조 제7조 및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참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비밀주의의 대상에 영업 및 사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물론 그 밖의 제3자도 과세관청에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는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요청국이 요청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요청을 받은 상대국의 재량 (discretion)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경우 정보 요청의 대상이 되는 관련 문서에서 영업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한 후 나머지 정보만을 정보 요청국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과세당국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지방과세당국(local authority)은 어떠한 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5) 변호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 받은 정보가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 직역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유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할 정도로 넓게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관련 서류나 기록의 공개를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밀유지 대상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정보 요청국을 대신하여 요청된 정보가 변호사 등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 (6) 은행비밀주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은행의 비밀보장의무(bank secrecy)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에서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을 포함한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도 영향을 미친다.<sup>31)</sup> OECD 모델 조세조약과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은행비밀주의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이

31) 이와 관련된 OECD 회원국들의 상황이 OECD가 2000년 발간한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와 2003년 발간한 ‘2003 Progress Report’에 보고되어 있다.



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32)</sup> 그러므로 양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이러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33)</sup>

#### (7) 수탁자가 보유한 정보 및 소유권에 관한 정보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된 정보가 수탁자(nominee, agent, fiduciary)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소유권에 관계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 중 Y국의 거주자 A가 Z국의 거주자 B에게 지급한 금액이 제3자인 C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내법 또는 관행에 의할 때 C에 관한 정보가 소유권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 또는 사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8) 국내법상 조세목적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는 해당 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이해관계(domestic tax interest)가 없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협약에 따르지 않은 정보요청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협약에 따르지 않은 정보요청은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4)</sup> 본 협정 제5조에 의하면

---

32)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5문단과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5조 제4문단 참조.

33)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에 관한 주석서 제19.10-19.15문단 참조.

34)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1문단.

정보 요청시 정보 요청국은 일정한 정보를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을 받은 상대국은 그러한 요청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에서는 정보 요청국이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사와 요청하는 정보의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요청 상대국은 이러한 정보 요청은 예견 가능한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제26조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즉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정보요청의 방법을 좀 더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원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가 협약에 따른 정보요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요청을 거부하기 전에 정보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협약상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해명을 구하여야 한다.

#### (10) 차별금지

정보 요청이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의 국민을 차별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정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6문단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에서는 첫 번째 문단을 제24조 제1문과 연결할 경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sup>35)</sup> 그러나 차별을 이유로 정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35)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17.

(11) 국내법 및 행정관행과의 상충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국내법과 행정관행에 상충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 제공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sup>36)</sup> 이는 정보 요청을 받는 국가로 하여금 자국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국의 조세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방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국내법상 일반적 행정절차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는 정보

요청된 정보가 국내법상 일반적 절차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제 3 절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의 방법 및 제한

#### 1.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의 방법

(1) 국제적 조세정보수집 방법의 유형

정보 요청이 이루어질 때 요청 상대국이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의 과세당국

---

36)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제 제3문단.

이 해당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과세당국은 해당 정보가 자국의 과세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모으기 위한 특별 수사 또는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되는 방법은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이나 행정 관행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sup>37)</sup> 한편 정보 요청국이 특정한 양식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는 그러한 양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정보를 보유(possession), 보관(custody), 지배(control)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질의
- 질의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증언을 얻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 출석 요청
- 출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
- 서적(book), 문서(paper), 기록(record) 또는 기타 물품(tangible property)의 작성 또는 제작 요청
- 서적, 문서, 기록 또는 기타 물품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자에 대한 해당 서적 등의 작성 또는 제작 방법에 대한 질의
- 증인 또는 작성자에 대한 선서(oath) 요청
- 세무조사와 관련된 서적, 문서, 기록 또는 기타 물품을 찾기 위한 관련 장소에 대한 접근 및 수색
- 서적, 문서, 기록 또는 기타 물품의 원본에 충실한 사본 작성 또는 제작
- 정보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증인 또는 작성자 등에 대한 서면질의 허용

---

37)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18.

## (2)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비용

비용에 관한 사항은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제13조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주석에서는 당사국들 간 비용 배분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수의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일반적 비용과 특수한 비용을 구분하고 있다. 이들 협정에서는 일반적 비용은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 특수한 비용은 정보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sup>38)</sup> 특수한 비용에는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한 특별한 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정보요청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는데 발생한 비용, 전문가 및 통·번역사 활용을 위한 추가적 비용,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가 해당 납세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부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정보 요청국이 모든 직접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은 비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권한 있는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높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들은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구상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 요청국이 번역과 증명서 교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거나, 요청 상대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제공한 예들이 있다.<sup>39)</sup> 어떠한 방안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든 시간적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정보 요청 초기 단계에 이러한 사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8) 유럽평의회-OECD 조세행정공조협약 제26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39)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외국 세무공무원을 국외세무조사(tax examination abroad)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납세자번호의 사용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자국의 거주자들에게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번호는 납세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프로그램 자동화를 위한 핵심요소이므로 납세자번호에 관한 정보는 상대국으로부터 자동화된 방법에 의하여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번호를 상대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당 납세자를 신속히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요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납세자번호의 제공이 국내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공무원들은 정보를 요청할 때 또는 제공할 때 원천지국의 납세자번호와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 모두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sup>40)</sup>

## 2. 국제적 조세정보수집에 대한 제한

### (1) 절차적 제한

국내법에서는 정보수집절차나 일반적인 정보교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를 위하여 다양한 절차적 권리에 관한 규정과 보호규정(safeguard)을 두고 있다.<sup>41)</sup> 이러한 규정에는 통지원칙(notification rule), 통지 이후 이루어진 정보교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요청을 받은 국가가 사용한 정보수집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조사(inquiry)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와 해당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40) 1997년 OECD 의회는 국제적 납세자번호의 사용에 관한 제안서(Recommendation on the Use of TIN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C(1997)39/FINAL))를 채택하였다.

41)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19.

있다. 이에 의하여 통지를 받는 자는 정보교환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는 물론 정보교환에 대하여 함께 상의할 권리, 해당 정보교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가지게 된다. 일부 회원국들은 탈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지의무를 면제하거나 정보교환 이후에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통지로 세무조사가 심각히 위태롭게 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통지의무를 면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권한 있는 당국이 통지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에 대한 보호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은 관련 법규와 행정관행을 서로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후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비밀유지

정보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 비밀(confidentiality)로서 보호되어야 한다.<sup>42)</sup>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은 정보요청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와 요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적용된다. 교환된 정보는 납세자나 그 대리인 또는 증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sup>43)</sup> 교환된 정보가 납세자나 그 대리인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그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에도 공개될 수 있다.<sup>44)</sup> 이러한 경우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납세자가 상급기관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특정 정보가 제공되고 그

42)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2문 및 OECD 모델 조세정보협약 제8조 참조.

43)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4)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에 관한 주석 제12문단. 개정 전 주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source)이 납세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합법적인 근거(legitimate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납세자나 그 대리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제공하는 정보 중 납세자나 그 대리인 또는 증인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sup>45)</sup>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교환된 정보는 해당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assessment)와 징수(collection), 집행(enforcement)에 관련된 자(者) 또는 기관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동의 없이는 그 외의 어떠한 자에게나 기관에도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에 관한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규정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감독기관(oversight authority)에 대한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감독기관이라 함은 체약 당사국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반 행정의 일부로서의 조세 행정(administration)과 집행(enforcement)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sup>46)</sup> 둘째,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동의를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 집행과 관련된 자 이외의 자나 기업, 기관에도 정보공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과 OECD 모델 조세조약 모두 교환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국내법에 의

45) 그러므로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된 정보와 관련된 서신(correspondence)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신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요청하여야 한다.

46)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에 대한 주석 제12문단 및 제12.1문단.



하여 취득한 정보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7)</sup>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직접세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세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조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상 규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러한 보호규정을 참조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협정과 조약 모두 어떠한 자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

많은 국가들은 국내법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정부문서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국내법상 민감한 정보에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는 은행정보를 요청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헝가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서면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이나 조약상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은 개인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어떠한 국내법상 규정에도 우선한다.<sup>48)</sup>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거나 조세조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 체약국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의 개정 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가능한 빨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상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법상 원칙에 의하여 지켜져야 하는

47) 참고로 유럽평의회-OECD 조세행정공조협약에서는 한 국가가 제공받은 조세정보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써 그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한 국가의 정보보호(secretcy) 규정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8)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주석 제12문단.

것이다.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교환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당국은 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할 수 있다.<sup>49)</sup>

### (3)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의 사용

교환된 정보는 해당 정보가 교환된 원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OECD 모델 조세조약이나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된 정보는 조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얻어진 재정 에 관한 정보는 재정과 관련 없는 범죄를 기소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나 부패 (corruption), 테러(terrorism)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의 경우 과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이들 국가들은 조세조약에 조세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한다.<sup>50)</sup>

## 제 4 절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OECD는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 2000년부터 글로벌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해오면서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51)</sup> 글로벌

---

49) 한편 실제에 있어서는 체약 당사국들의 국내법상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의 범위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이나 조세조약에서의 규정보다 좁을 경우, 협정이나 조약상 규정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 반면 국내법상 규정의 범위가 협정이나 조약상 규정보다 넓을 경우 협정이나 조약상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된다.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 20.

50)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에 대한 주석 제12.3문단 참조.

51) OECD,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 2013년 6월 12일 방문).

포럼에는 OECD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도 참여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101개 국가가 국제기준의 이행을 확약하고 이 글로벌포럼에 가입해왔다. 글로벌포럼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각국의 제도 현황, 정보교환 이행 상황 등을 상호 평가하는 이행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럼에서의 논의결과를 참여국들이 준수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국제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포럼에서는 2002년에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을 만들었다. 또한 2005년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의 활용가능성과 신뢰성에 관한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래에서는 국제적 정보교환의 핵심적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sup>52)</sup>

### 1.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

세계적으로 3,000여개의 양자 간 조약이 OECD 모델 조세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자 간 정보교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체약 당사국들이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조세조약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계 경제가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체약 당사국들이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상호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52) 국제적 정보교환 일반론을 설명한 ‘제2장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의 개요’ 부분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반복을 피하도록 한다.

53) OECD, Article 26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http://www.oecd.org/ctp/treaties/article26oftheoecdmodeltaxconventiononincomeandcapital.htm> 2013년 6월 1일 방문).

정보교환 규정은 국내법의 적용과 집행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에서 양 당사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정보교환 의무는 해당 규정이 조세조약의 적용에는 물론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것이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단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sup>54)</sup> 다음에서는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sup>55)</sup>

### (1) 적용범위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 조약상 규정된 내용을 수행하거나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political subdivision) 또는 그 지방정부(local authority)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정보교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6)</sup> 아울러 정보교환의 대상은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인적 범위나 대상 조세의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57)</sup> 따라서 비거주자에 관한

54) 조세징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55) OECD 모델 조세조약은 199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4년과 1995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에 개정되었다. 정보교환에 관한 제26조에는 2012년 7월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56)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1문단.

57)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서는 조약의 인적 범위를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으로 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대상 조세를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정하고 있다. ‘총소득과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적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보며, 여기에는 ‘자본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뿐만 아니라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이 지급한 근로임금총액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내용이나 조약상 대상 조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목과 관련된 행정작용이나 집행작용에 필요한 정보도 정보교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 (2) 비밀유지의무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두 번째 문단에는 교환된 정보는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며 해당 정보는 원칙적으로 조약상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sup>58)</sup> 이에 의하면 일방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해당 조세의 부과 및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 결정에 관련된 자(者)나 당국 또는 그러한 자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sup>59)</sup> 이러한 자나 당국은 그 정보를 당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개정에 의하여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아울러 정보를 제공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교환된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60)</sup> 이러한 개정은 서로 다른 국가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조세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3) 정보교환의 한계

이러한 정보교환 규정이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58)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2문단.

59) 여기에서의 ‘당국’은 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60) 이는 이전 OECD 조세조약 주석서 제12.3문단에 선택적 규정(optional provision)으로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조세조약에 반영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중 제26조에 2012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되며, 또한 일방 또는 타방 계약국의 법 또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에 반하는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sup>61)</sup> 다만, 여기서의 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조약상 규정된 정보교환이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제공의 요청을 받은 국가는 해당 정보의 제공이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의 공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국가의 신중한 검토에 의하여 해당 정보가 이와 같은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요청국에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비밀원칙의 위배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정보교환의 실효성 확보

현재의 정보교환 규정에서는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는 요청된 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상대 국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은행비밀주의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일부 역외금융센터나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정보교환 요청을 거부하여 온 것에 대응하여 OECD의 정보교환 기준에 부합하는 명문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7월에 추가된 것이다.<sup>62)</sup>

61)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1), 459쪽.

62) 2002년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에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 각국의 관행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 2005년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6조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일방 계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sup>63)</sup> 따라서 일방 계약국이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타방 계약국은 비록 해당 정보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64)</sup> 그러므로 단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사실상 모든 국가들은 은행비밀주의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칙(confidentiality rule)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은 이들 규정과 양립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상 금융정보보호 규정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sup>65)</sup>

---

다. 여기에는 글로벌포럼에 의하여 논의되어온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의 내용도 함께 고려되었으며, 보고서 ‘조세목적상 위한 금융정보에의 접근(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에 서술되어 있는 금융정보 접근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개정들은 해당 규정의 본질적 변화를 의도한 것이 아닌, 합리적인 해석을 통한 규정의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63)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4문단.

64)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제5문단.

65)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중 2005년에 추가된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는 캐나다(2006년 9월 5일 서명, 2006년 12월 18일 발효), 파나마(2010년 10월 20일 서명, 2012년 4월 1일 발효), 스위스(2010년 12월 28일 개정의정서 서명, 2010년 7월 25일 개정의정서 발효), 우루과이(2011년 11월 29일 서명, 2013년 1월 22일 발효), 바레인(2012년 5월 1일 서명, 2013년 4월 26일 발효) 등과의 조세조약이다.

## 2.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글로벌포럼은 조세피난처와의 꾸준한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2001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문형식으로 구체화한 것이 2002년에 만들어진 ‘OECD 조세정보 교환 협정(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TIEA’)’이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조세피난처와 같이 조세조약 상대국의 세율이 너무 낮거나 세금이 없어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국가 간 체결하는 협정이므로, 정보교환, 상호협의, 징수공조 및 체약국 간의 과세권 배분까지 담고 있는 OECD 모델조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교환의 대상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은 해당 조약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조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하여, 조세정보교환협정은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세무조사(investigation)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조세조약에 비하여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sup>66)</sup>

### (1) 협정의 목적과 범위 및 대상 조세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적용과 집행에 관

---

66)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Overview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00161107.htm> 2013년 6월 2일 방문)



련될 것으로 예상(foreseeably relevant)되는 정보교환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67)</sup> 그러한 정보에는 대상 조세의 결정·부과 및 징수 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 조세 사건의 수사 및 소추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됨과 아울러 비밀로서 취급된다. 정보를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협정 서명일 현재 체약당사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로 한다.<sup>68)</sup>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에도 이 협정이 적용되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모든 조세에도 적용된다.<sup>69)</sup>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범위는 체약당사국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확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조세 및 관련 정보수집방법과 관련된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2)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세무조사(investigation)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sup>70)</sup>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

67)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1조.

68)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3조 제1문단.

69)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3조 제2문단.

70)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5조 제1문단.

한 경우 그 국가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요청 받은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수집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sup>71)</sup> 요청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 등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sup>72)</sup> 계약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자가 보유하는 정보나 법인(company)이나 동업기업(partnership), 신탁(trust), 재단(foundation), 기관 및 그 밖의 자에 대한 소유권 및 소유구조(ownership chain)에 관한 정보, 소유구조와 관련된 자에 대한 소유정보와 신탁의 경우, 재산양도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sup>73)</sup>

정보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요청과 정보의 예상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청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첫째, 조사 또는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둘째, 정보의 성격과 그 정보를 받고자하는 형식 등 요청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 셋째, 요청 대상 정보와 관련된 조세 목적, 넷째, 요청 대상 정보가 상대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상대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자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 다섯째, 요청 대상정보의 보유자라고 알려진 모든 인(人)의 이름과 주소, 여섯째, 해당 정보의 요청이 자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 대상 정보가 자국의 관할범위 내에 있었다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내법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따라

71)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5조 제2문단.

72)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5문 제3문단.

73)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5문 제4문단.

서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 일곱째, 정보 요청국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 이외에 대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시도하였다는 진술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sup>74)</sup>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정보 요청국에 제공하여야 한다.<sup>75)</sup> 신속한 답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주고,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수집에 장애가 있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보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불능사유, 장애의 성격, 거부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3) 해외세무조사

일방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자국 내에 들어와 관계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을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sup>76)</sup> 타방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개인들과의 면담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일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의 일부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sup>77)</sup>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 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74)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5조 제5문단.

75)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5조 제6문단.

76)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6조 제1문단.

77)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6조 제2문단.

지정된 조사당국 또는 조사공무원, 절차 및 조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sup>78)</sup>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4) 정보요청에 대한 거부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정보 요청국의 국내법의 시행 및 집행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 받아서는 아니 된다.<sup>79)</sup>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 협정은 계약국에게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상 비밀이나 또는 거래과정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up>80)</sup> 그리고 대상 정보가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 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그 밖의 특정 법정대리인간에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다.<sup>81)</sup>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정보의 공개가 공공정책 및 공공질서에 반할 경우에도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sup>82)</sup>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해당 정보 요청이 동일한 여건에 있는 정보 요청국의 국민에 비하여 자국의 국민을 차별하고 있는 정보 요청국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sup>83)</sup>

---

78)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6조 제3문단.

79)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1문단.

80)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2문단.

81)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3문단.

82)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4문단.

83)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7조 제6문단.

## (5) 비밀유지

이 협정에 따라 정보 요청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부과 및 징수, 그에 관한 집행 또는 소추, 불복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자 또는 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한 당국에만 공개될 수 있으며, 이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정보는 공개 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는 공개될 수 있다. 제공된 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정보 제공이 허용된 자나 당국 외의 자나 당국, 그외 관할권에 공개될 수 없다.<sup>84)</sup>

## (6) 상호합의절차

체약 당사국들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들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sup>85)</sup> 나아가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과 해외세무조사에 적용될 절차에 관하여 상호합의 할 수 있다.<sup>86)</sup> 체약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상호 간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형식에 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sup>87)</sup>

## 3. 다자간 협정

OECD는 정부 간 조세정보의 자동적 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에 관한 협정

84)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8조.

85)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11조 제1문단.

86)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11조 제2문단.

87) OECD 조세정보교환협정 제11조 제3문단 및 제4문단.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대한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적 정보교환에 의할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양도, 부동산, 연금, 로열티 등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체를 상대국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괄 제공하게 된다. OECD는 1988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다수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협력을 위하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정(Council of Europe/OECD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에는 OECD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0년 5월에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동 협정의 의정서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의정서에서는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험금 모두를 대상 조세로 하고 있다. 정보교환의 종류에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은 물론 자동적 정보교환과 자발적 정보교환을 포함하였으며, 동시세무조사와 해외파견조사 등 해외세무조사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입국 간 조세채권회수를 위하여 보전조치 등의 징수협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1년 7월에 또다시 의정서가 개정되었으며,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21개국이 가입·서명하였다.

이외에도 다자간 협정을 통하여 정보교환협정의 실행을 앞당기는 방안이 카리브해 국가들 및 태평양 국가들과 OECD 회원국들 간에 추진되고 있다. 2007년 10월 이래 북유럽국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버뮤다(Bermuda), 영국령 버진군도(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만군도(Cayman Islands), 건지(Guernsey), 맨섬(Isle of Man), 저지(Jersey) 등과 42개의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다.

참고로 OECD가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협약 이외에 국제탈세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 ‘JITSIC’)도 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서 공조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

다.88)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는 지능적인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2004년 4월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에 의하여 출범한 국제협의체로, 같은 해 9월 워싱턴 DC에 첫 사무소를 연 후 2007년 런던에 두 번째 사무소를 열었다. 2007년에 일본이 합류하였고 우리나라도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에 가입하였다.89)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의 목적은 첫째, 회원국들이 탈세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전략과 이를 조장하는 자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둘째, 이러한 조세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공유하며, 셋째, 해당 조세전략에 대한 정보 및 이를 조장하는 자와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넷째,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제적 운영체계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조세전략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90) 이러한 국제탈세정보센터에 대하여 충분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91)

---

88) 주요국 국제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도 다자간 협의체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89) HM Revenue and Customs, Anti Avoidance Group: JITSIC (<http://www.hmrc.gov.uk/avoidance/aag-jitsic.htm> 2013년 6월 2일 방문).

90)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ttp://www.irs.gov/pub/irs-utl/jitsic-finalmou.pdf> 2013년 5월 30일 방문).

91) Business IFC, JITSIC Six Years (<http://www.businessifc.com/articles/Dave-Hartnett-Interview-JITSIC-six-yearson.htm> 2013년 5월 30일 방문).

## 제 3 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국제적 조세회피의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감에 따라 각 국가들은 조세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 조세정보교환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과 관련된 국내법과 체결 협약들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조세정보교환의 중요성을 일찍이 자각하고 국제 사회에서 관련 법제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는 조세정보교환과 관련된 OECD의 기준을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에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조세정보교환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편,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은행비밀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보다는 공개의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불거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사건들로 국제적 정보교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정비와 협약체결에 힘쓰고 있다. 각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조세정보보호 관련 일반규정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조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개에 관한 각국의 규정과 함께 과세관청 내에서의 정보교환 및 과세관청과 타 국가기관 간의 정보교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조세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은행비밀주의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 제 1 절 미국의 조세정보교환

미국의 조세정보 관련 정책은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20세기 초부터 여러 차례 변화가 있어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조세정보



에 관한 논의가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비밀보호 간의 상충문제로 다루어졌으며, 이는 조세정보와 개인의 납세순응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sup>92)</sup> 이러한 논의가 거듭될 때마다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정책과 비밀을 유지하는 정책 간의 폐지와 도입이 반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조세정보보호규정에서는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 없이는 특정 납세자의 납세신고 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국내법상의 조세정보 관련 규정과 미국이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미국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1) 조세정보보호 관련 일반규정

미국 내국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조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규정된 공익 목적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93)</sup> 납세자가 특정인을 지정하여 본인의 납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허용할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

92) 조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조세정보보호가 개인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세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민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려해 과세관청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제공된 정보가 과세관청에 의해서만 이용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조세체계에 따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반면에 많은 학자들은 개인 정보보호규정이 더 이상 납세자 순응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대중이 납세신고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것이 강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조세정보가 공공정보인가에 대한 논쟁과도 이어져있다.

93) Internal Revenue Code(이하 'IRC') §6103.

공개가 전체 세무행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sup>94)</sup> 미국 내국세법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조세조약이나 기타 양자협약에 의한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정보공개를 포함하고 있다.<sup>95)</sup>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미국 내 조세정보교환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의 대기업 및 중기업국(Large and Mid-Size Business Division, 'LMSB')의 국장(Deputy Commissioner, 이하 '대·중기업국 국장')에게 요청하며, 해당 국장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교환 요청을 담당부서로 전달한다. 요청된 정보가 국세청 담당부서로부터 전달되면 담당 국장과 관련 직원은 해당 정보를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내기 위한 문서로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된 정보를 상대국의 과세당국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대·중기업국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특정 자동적 정보교환 또는 정기적 정보교환(routine information exchange)은 미국 국세청 본청(National Office)의 정보교환 담당부서(Exchange of Information Team)에 의하여 처리된다.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공개가 미국 국내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sup>96)</sup>

미국 국세청이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sup>97)</sup> 일단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공개협정에 의하여 정보(tax convention

94) IRC §6103(c).

95) IRC §6103(k)(4).

96) IRC §6103(p)(4)와 Privacy Act of 1974 참조.

97) 미국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외국에 정보를 요청함에 있어 International Procedures Handbook - Exchange of Information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담당 국장과 관련 직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요청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요청서에 국장이 서명하여 상대국에 전달한다. 자발적인 정보교환의 경우 국장과 관련 직원은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전달한다. IRS, Part 11. Communications and Liaison: Chapter 3. Disclosure of Official Information:

information, 이하 ‘조세조약 등에 의한 정보’)가 취득된 이후에는 이는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sup>98)</sup> 조세조약 등에 의한 정보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도 포함된다. 조세조약에 의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 관련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자 또는 당국에 대하여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sup>99)</sup> 이러한 정보공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sup>100)</sup> 또한 외국의 과세당국의 동의에 의하여 테러 및 위협 등의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 공무원에게 공개될 수 있다. 넷째, 재무부장관(Secretary)은 조약 상대국과 협의를 거친 후 조세행정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 납세자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는 해당 정보가 관련된 납세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납세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sup>101)</sup> 이 경우 해당 납세자는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집행, 그리고 그에 관련한 기소 등과 연관이 있는 자로 본다. 이러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세청 본부(Headquarter)와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

---

Section 25. Disclosure to Foreign Countries Pursuant to Tax Treaties ([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25.html](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25.html) 2013년 6월 2일 방문).

98) IRC §6105(a).

9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의하여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해당 정보공개가 내국세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한 해당 정보의 공개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assessment), 징수(collection) 및 집행(administration), 강제(enforcement), 기소(prosecution), 항소 및 상고(appeal)에 관련되어 있는 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100) 자세한 절차에 관하여는 Rev. Proc. 2006-54 ‘Procedures for Requesting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 under Tax Treaties’ 참조.

101) IRC §6103(a).

가 소송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대·중기업국 국장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하고, 소송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세청의 변호인단 (Associate Chief Counsel) 제7분과(Branch 7)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중기업국 국장은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의하여 교환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승인할 최종 권한을 가진다. 해당 정보를 제공한 외국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연방조세행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sup>102)</sup>

미국 내국세법에서는 외국 과세당국 이외의 외국기관이나 외국의 개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특정한 상황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는 미국이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교환은 해당 조약이나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세무신고서와 세무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타국에서의 납세의무 등을 위하여 공개될 수 있다.<sup>103)</sup>

## (2) 은행비밀주의

과거 미국은 소위 ‘밀리(Miller) 판례법’에 따라 금융정보 기록을 은행의 영업문서(Business Records)로 보고, 이에 대한 기관들의 접근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권(riprivity)을 인정하지 않았다.<sup>104)</sup> 국회는 이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인식하고 금융

102) IRC §6103(e)(7). IRS, Part 11. Communications and Liaison: Chapter 3. Disclosure of Official Information: Section 2. Disclosure to Persons with a Material Interest. ([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02.html](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02.html) 2013년 6월 2일 방문).

103) IRC §6103(c) 및 (e). 예를 들어 납세자의 서면요청과 공개에 대한 동의에 의하여 미국 국세청은 조약체결 상대국에게 관련 납세자가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되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104) United States v. Miller, 425 U.S. 435 (1976).

정보보호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RFPA')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정보에 대한 사생활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sup>105)</sup> 이 법에 의하면 연방정부기관은 정보주체인 고객의 승인, 행정기관에 의한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 or summon)의 발부, 수색영장(search warrant)의 발부, 사법기관에 의한 소환장(judicial subpoena), 연방정부기관에 의한 서면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연방정부기관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이를 통보(advance notice)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고객은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제공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금융정보를 보관하는 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도 역시 통보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금융기관이 금융범죄제재네트워크(Financial Crime and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연방정부와 연부정부기관 및 부서, 연방정부공무원에 대한 개인 금융정보공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사기업에 대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고객은 개인과 5명 이하의 공동사업경영자(partner)를 보유한 동업기업(partnership)이며, 따라서 법인(corporation), 신탁(trust),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 대형 동업기업(large partnership) 등은 본 법에 의한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거주자가 외국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진신고하도록 하여 세수 증가와 징세비용 감소, 조세형

---

105) 12 U.S.C. Chapter 35 Right to Financial Privacy §§3401-3422. 참고로 미국 국내법 중 '은행비밀보장법(Bank Secrecy Act)'는 개인금융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아닌 돈 세탁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내용도 이 법에 포함된다. Bank Secrecy Act of 1970 참조.

평성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1977년 미국 내외로의 자금유출 및 반입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가장 먼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를 도입하였다. 신고대상은 당해 연도 중 한번이라도 총액으로 잔고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한 금융자산이 보유된 해외금융계좌로서, 이러한 금융계좌를 가진 자는 신고의무자가 된다.<sup>106)</sup>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들이 처분권한을 가진 법인 및 동업기업, 신탁, 그리고 일정한 체류기간을 충족한 세법상 거주자 등이다.<sup>107)</sup> 그러나 해외금융계좌가 은행이 보유한 이전거래계정으로 은행 간 결제가 유일한 목적인 계정의 경우나 은행비밀보장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고 의무가 있는 계정인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른 보고 의무가 없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개인은 신고서에 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는 미국 및 미국령 밖에 개설된 예금계좌(savings account), 당좌계좌(checking account), 적금계좌(time deposit) 등의 은행계좌(bank account)와 뮤추얼펀드(mutual fund), 위탁계좌(brokerage account), 증권파생상품계좌(securities derivatives account) 등의 증권계좌(securities account), 계좌명의인이 지분을 보유한 혼합펀드계좌(commingled fund account), 그 밖에 해외금융기관에 의하여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 계좌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2008년 UBS 사건을 계기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주목받게 되었다.<sup>108)</sup> 미국 국세청은 2009년 3월 자발적 공개프로그램

106)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 계좌당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위반한 경우는 10만 달러 또는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7) Notice 2010-23.

108) 'UBS 사건'의 경위를 보면, 미국 국세청이 2008년 5월 역외계좌를 이용하여 미국 고객의 자산은닉 및 세금포탈을 조장한 혐의로 UBS 전직 직원을 체포하여 자산은닉 및 탈세가 회사차원에서 조장된 사실을 밝혀낸 후, 2008년 7월 연방지방법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실시하면서, 같은 해 9월 23일까지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미신고소득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신고소득을 공개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대 6년의 기간에 대하여 계좌잔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만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당시 14,7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공개프로그램으로 6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은행계좌정보가 공개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3,000명 이상의 납세자가 해외계좌 관련 미신고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공개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2011년 2월부터 8월 31일까지 제2차 자발적 공개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제1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도록 그 제재 수준을 제1차의 경우보다 다소 무겁게 하여 계좌잔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sup>109)</sup>

---

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소환장(John Doe Summons)<sup>25)</sup>을 발부받아 UBS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 2만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UBS 은행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조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미국과 스위스 간 외교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009년 8월 19일 스위스와 미국은 UBS 은행으로 하여금 4,450명의 미국인 고객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하되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합의(UBS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이 스위스 정부에 정보제공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UBS 은행계좌 보유자들이 스위스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2010년 1월 21일 스위스 행정법원은 UBS Agreement는 기존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스위스 당국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3월 31일 스위스 정부와 미국이 UBS Agreement가 기존의 미국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보다 우선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세조약 의정서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 4월 14일 스위스의회의 이 의정서가 제출되어 6월 17일 국민투표 없이 승인되었다. 8월 2일 스위스정부는 4,450건의 UBS 계좌 정보를 미국에게 제공하였다.

109)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75-76쪽.

#### (4)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1) 도입배경

미국은 국제적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우 포괄적인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2010년 3월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핵심은 모든 해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 재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미국인 및 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해외금융기관이 위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해외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모든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RAR)가 미국 납세자의 신고를 통하여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CTA)는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10)</sup> 아래에서는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살펴본다.

##### 2) 적용요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기관이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예금수신, 타인 계좌를 통한 금융자산보유, 증권, 각종 지분에 대한 투자 또는 거래 등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하는 기관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 중개인,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펀드, 헤지펀드 및 개인투자회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110) 이경근·서덕원·김범준,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1. 626-628쪽.



미국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미국계 은행의 해외지사,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또는 금융자회사 그리고 미국 납세자 신분을 취득한 해외금융기관은 제외된다.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미국인은 상장기업과 그 계열사·은행·뮤추얼 펀드·부동산 투자신탁·공익신탁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과 미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다.<sup>111)</sup> 보고대상인 금융계좌는 은행계좌, 위탁계좌 및 관리계좌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이나 채권지분 등이다. 다만 계좌주가 모두 자연인이고 동일 해외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계좌잔고의 총액이 5천 달러 이하인 저축성 예금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미국 원천인 이자·배당금·임차료·급여·보험료·연금 등 매년 고정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은행 또는 저축기관의 해외지사가 지급하는 이자도 이에 해당하며, 미국이 원천인 배당금이나 모든 유형의 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가액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3) 해외금융기관의 의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기관은 미국 재무부와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총수입과 전체 입출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미국 재무부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sup>112)</sup> 해외금융기관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이 이러한 정보제공

---

111) 실질적 소유 여부는 사업의 형태별로 판단한다. 회사(corporation)는 특정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또는 주식가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동업기업(partnership)은 특정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수익권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신탁(trust)은 특정 미국인이 신탁소득을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신탁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소유를 하는 것으로 본다.

112) 보고해야하는 계좌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

을 금지하는 경우, 해외금융기관은 계좌주에게 해당 소재지법의 적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거나 당해 계좌를 폐쇄할 것을 권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국 재무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미국이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국제적 정보교환은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내국세법에도 국제적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양 체약국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국세청의 대·중기업국 국장이다.<sup>113)</sup>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세청과 외국의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 있는 당국으로서의 개인은 서면에 의한 정보요청과 정보수령을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다. 아래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의 내용을 살펴본다.

### (1)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

미국은 2013년 6월 현재 6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정보교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sup>114)</sup> 여기서의 정보는 소득세와 상속 및 증여세, 소비세 기타 조

잔액, 총수입과 전체 입출금내역 등이다.

113) Delegation Order 4-12 참조.

114) 미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르메니아(Armenia), 호주(Australia),

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sup>115)</sup>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성행하는 것에 대응하여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의 대상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에 관련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116)</sup> 이와 같이 미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정책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으며 특히 1980년에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에 이러한 정책방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정보교환규정에서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는 자국의 국내세법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를 요청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입수하여 요청된 형식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OECD 모델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2005년에서야 비로소 도입되었다.

---

오스트리아(Austr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베이도스(Barbados), 벨로루시(Belarus), 벨기에(Belgium), 캐나다(Canada), 중국(China), 사이프러스(Cyprus),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이집트(Egypt), 에스토니아(Eston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조지아(Georgia),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이슬란드(Iceland),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자메이카(Jamaica), 일본(Jap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한국(Korea),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 멕시코(Mexico), 몰도바(Moldova), 모로코(Morocco),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파키스탄(Pakistan), 필리핀(Philippines),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루마니아(Romania),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스페인(Spain), 스리랑카(Sri Lanka),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타지키스탄(Tajikistan), 태국(Thailand), 트리니다드(Trinidad), 튀니지(Tunisia), 터키(Turkey),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우크라이나(Ukraine), 구소련(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영국(United Kingdom),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베네수엘라(Venezuela) 베트남(Viet nam), 영국령 버진군도 (British Virgin Islands) 등이다.

115) IRS, Part 11. Communications and Liaison: Chapter 3. Disclosure of Official Information: Section 25. Disclosure to Foreign Countries Pursuant to Tax Treaties ([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25.html](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25.html) 2013년 6월 2일 방문)

116) 나아가 미국 법원 또한 미국 국세청이 국외에서의 정보수집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서는 조세조약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의해 상대 체약국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state)의 세무서나 사법기관, 기타 연방정부기관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비연방 조세행정의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는 경우 공개 전 조세조약에 의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sup>117)</sup> 그러나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들 조약에 의하여 교환된 정보를 주(state)정부와 지역정부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약에 의하면 각 주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 체약국의 과세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전달은 대·중기업국 국장을 통하거나 또는 상대 체약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연방조세정보로 취급되어 그 사용은 조세조약과 기본협정(Basic Agreement)에 의하여 규율된다.<sup>118)</sup>

미국은 자치령(territory)들과도 조세이행협정(Tax Implementation Agreement)이나 조세조정협정(Tax Coordination Agreement), 양해각서(MOU) 등과 같은 연방-자치령 간 협약(FedState agreement)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협약들도 정보교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119)</sup> 자치령과의 정보교환 또한 조세조약에서의 경우와 같이 대·중기업국 국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sup>120)</sup> 미국 내국세법에 의하여 미국 자치령 중 연방-자치령

117) 따라서 조세조약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의한 정보임을 나타내는 직인을 찍어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IRS, Internal Revenue Manual, Part 11. Communications and Liaison: Chapter 3. Disclosure of Official Information: Section 25. Disclosure to Foreign Countries Pursuant to Tax Treaties ([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25.html](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25.html) 2013년 6월 2일 방문).

118) IRS, Internal Revenue Manual, Part 11. Communications and Liaison: Chapter 3. Disclosure of Official Information: Section 32. Disclosure to States for Tax Administration Purposes ([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32.html](http://www.irs.gov/irm/part11/irm_11-003-032.html) 2013년 6월 2일 참조).

119) 미국의 자치령에는 푸에르토리코(Commonwealth of Puerto Rico), 버진군도(Virgin Islands), 괌(Guam),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 북마리아나군도(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등이 있다.

120) Delegation Order 4-36 참조.

간 협약에 의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주(state)로 다루어지는 곳은 해당 자치령과의 협약 자체가 조세조약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이 받은 정보는 해당 협약이나 내국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될 수 있다.<sup>121)</sup>

또한 미국은 세금징수를 위한 상호원조프로그램(Mutual Assistance Collection Program, ‘MCAP’)에 의하여 캐나다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와 각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의하여 원조 요청을 받은 국가는 자국의 거주자가 요청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이름, 주소,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 체납조세의 종류, 체납금액 등 징수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조세정보교환협정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미국은 1984년 바베이도스와 최초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보교환에 대한 적극적 정책은 OECD의 정책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은 미국이 이전에 조세피난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1] 미국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현황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1	바베이도스(Barbados)	1984. 11. 03.	1984. 11. 03.

121) IRC §6103(d) 및 §6105.

## 제 1 절 미국의 조세정보교환

	채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2	그레나다(Grenada)	1986. 12. 18.	1987. 07. 13.
3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1987. 01. 30.	미발효
4	도미니카(Dominica)	1987. 10. 01.	1988. 05. 09.
5	버뮤다(Bermuda)	1988. 12. 02.	1988. 12. 02.
6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1989. 01. 11.	1991. 02. 09.
7	코스타리카(Costa Rica)	1989. 03. 15.	1991. 02. 12.
8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1989. 08. 07.	1989. 10. 12.
9	멕시코(Mexico)	1989. 11. 09.	1991. 01. 18.
10	페루(Peru)	1990. 02. 15.	1993. 03. 31.
11	온두라스(Honduras)	1990. 09. 27.	1991. 10. 11.
12	마셜군도(Marshall Islands)	1991. 03. 14.	1991. 03. 14.
13	가이아나(Guyana)	1992. 07. 22.	1992. 08. 27.
14	콜롬비아(Colombia)	2001. 03. 30.	미발효
15	케이맨군도(Cayman Islands)	2001. 11. 27.	2006. 03. 10.
16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2001. 12. 06.	2003. 02. 10.
17	바하마(Bahamas)	2002. 01. 25.	2006. 01. 01.
18	영국령 버진군도 (Virgin Islands, British)	2002. 04. 03.	2006. 03. 10.
19	네덜란드령 신트마르턴(Sint Maarten)	2002. 04. 17.	2007. 03. 22.
20	쿠라사우(Curaçao)	2002. 04. 17.	2007. 03. 22.
21	건지(Guernsey)	2002. 09. 19.	2006. 03. 30.
22	맨섬(Isle of Man)	2002. 10. 02.	2004. 01. 01.
23	저지(Jersey)	2002. 11. 04.	2006. 06. 26.

제 3 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24	아루바(Aruba)	2003. 11. 21.	2004. 09. 13.
25	자메이카(Jamaica)	2003. 12. 18.	2003. 12. 18.
26	브라질(Brazil)	2006. 03. 20.	미발효
27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2008. 12. 08.	2009. 12. 04.
28	지브롤터(Gibraltar)	2009. 03. 31.	2009. 12. 22.
29	모나코(Monaco)	2009. 09. 08.	2010. 03. 11.
30	파나마(Panama)	2010. 11. 30.	2011. 04. 18.

\* 자료: OEC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United States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taxinformationexchangeagreementstieasunitedstates.htm>)

## 제 2 절 호주의 조세정보교환

### 1. 호주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1) 조세정보보호 관련 일반규정

호주에서의 납세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된 법률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98)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상의 납세자정보보호규정이다.<sup>122)</sup>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일반적 정보보호원칙(information privacy principle)의 대상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국가에서 규정한 정보보호원칙(national privacy principle)의 대상인 사적단체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규율한다.<sup>123)</sup> 개인정

122) 참고로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법(common law) 상 개인의 사생활권(right to privacy)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123)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여부는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가 만든 납세자 번호의 수집과 저장, 사용, 보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의하면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납세자의 고용주, 은행 등의 금융기관,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연금펀드, 퇴직저축계좌제공자 등만이 개인의 납세자 번호(Tax File Number)를 요구할 수 있다.<sup>124)</sup> 그 외의 경우 개인은 납세자 번호의 제공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에게 납세자 번호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조세행정법에서는 납세자 정보의 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public benefit)이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사익(entity's privacy)보다 큰 경우에만 정보 공개가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25)</sup>

호주의 경우 연방세(federal tax)는 호주 국세청이 관장하고 주세(state tax)는 주세무서(Office of State Revenue)가 관장하고 있다.<sup>126)</sup> 호주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의 종류 또는 내부 지원(internal support)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업무라인(business line)으로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업무라인이나 사무소 간이라도 세무공무원이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는 허용된다.<sup>127)</sup> 호주 국세청과 주

---

Information Commissioner)가 감독한다.

124)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종교적·철학적 관점이나 성적 취향, 범죄 기록, 개인의 건강정보, 건강정보를 제외한 개인의 유전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 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125)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355-1.

126) 호주 국세청은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기관으로 2011년 6월 현재 25,000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에 61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About Us 참조 (<http://www.ato.gov.au/About-ATO/About-us/> 2013년 6월 4일 방문).

127) Tax Administration Act 1953 §355-25 및 §355-50.



세무서 간에 정보공유도 허용된다.<sup>128)</sup> 한편 호주 국세청 내에서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내부정책(internal policy)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부지침(internal instruction)과 절차에 관한 서류(procedural document)는 물론, 기업경영에 관한 업무보고서(Corporate Management Practice Statement), 기업경영에 관한 업무지침(Corporate Management Practice Instruction), 국가정보 보안정책(National IT Security Policy) 등이 포함된다.<sup>129)</sup>

호주 국세청은 탈세 및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제도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호주 범죄위원회(Australian Crime Commission, ‘ACC’)와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호주 정부변호사회(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 ‘AGS’),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호주 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alysis Centre, ‘AUSTRAC’),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기소국장(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PP’) 등 다른 정부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sup>130)</sup> 호주의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보여주는 주요한 예가 위켄비 프로젝트(Project Wickenby)이다. 위켄비 프로젝트는 호주 국세청과 호주 연방경찰, 호주 범죄위원회,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 기소국장 간 협력체로서 2006년에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탈세와 조세회피, 금융시장 또는 기업 관련 법규의 위반, 사기 또는 속임수(deception)나 돈세탁, 재산은닉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범죄행위 등을

---

128) Tax Administration Act 1953 §355-65 및 Tax Administration Act 1953 Part 3A “Cooperation between Commonwealth and State Taxation Authorities” 참조.

129) ATO Practice Statement Law Administration PS LA 2002/19 (Withdrawn) “Security of Taxpayer Data (Written Binding Advice)” 참조 (<http://law.ato.gov.au/atolaw/view.htm?docid=PSR/PS200219/NAT/ATO/00001> 2013년 6월 4일 방문).

130)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rgeting Tax Crime -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Issue 1-4, 2009.

수색, 예방, 조사하고 관련법을 집행하는 것이다.<sup>131)</sup>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정부 목적에 한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조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sup>132)</sup> 조세행정법에서는 공개가 가능한 상대기관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 정보는 법집행 및 관련 목적을 위하여도 공개될 수 있다.<sup>133)</sup>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정보공개팀(Information Disclosure Team)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세무공무원에게 공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 상대방과 공개 목적이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국세청장(Commissioner) 또는 부청장(Second Commissioner), 상급공무원(senior executive service employee) 등 상관(senior officer)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행하는 상관은 해당 정보공개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팀에 정보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sup>134)</sup> 정보공개시에는 호주 국세청 인터넷에 제공된 양식(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따라야 한다.

## (2) 은행비밀주의

호주 관습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and secrecy)를 진다. 이는 *Tournier v. National Provincial and Union Bank of England* 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나 이 판결에서도 비밀유지의무가 절대적인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다.<sup>135)</sup> 이 판결

131) 2012년 2월 29일 현재 위켄비 프로젝트의 성과로 기소된 자는 6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호주 범죄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기소된 자는 17명, 호주 연방경찰의 조사에 의한 자는 48명이다. Kathrin Bain, *Tax Secrecy and Tax Transparency: the Relevance of Confidentiality in Tax Law*: Austrlia, Rust Conference Materials, 2012.

132) *Tax Administration Act 1953* §355-60.

133) *Tax Administration Act 1953* §355-70.

134) *Tax Administration Act 1953* §355-70.

135) *Tournier v. National Provincial and Union Bank of England* [1924] 1 KB 461, 473.

에서는 첫째, 법이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경우, 둘째, 대중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 셋째,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넷째, 정보공개가 고객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4가지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법규에서 정보공개가 요구됨에 따라 현재 호주에서의 은행비밀주의는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36)</sup>

호주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에 의하여 호주 국세청에 부여된 정보접근권한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sup>137)</sup> Smorgon & Ors v. FCT & Ors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은행에 대하여 안전금고 안에 보관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sup>138)</sup> 이는 은행이 고객에 대하여 지켜야할 계약상 의무보다 법규상 요청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은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령(Income Tax Assessment Regulations 1936)에서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투자조직(investment body)에 투자자가 납세자번호나 사업자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제공한 경우 해당 투자조직은 투자자의 예금에 대한 상세한 서면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39)</sup> 이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또는 사

---

136) Latimer P., Bank Secrecy and Confidentiality Law in Practice in Australia and Their Impact on the Control of Economic Crime, 14(3)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51, 551-2 (1996). 이러한 법규들로는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1998,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Proceeds of Crime Act 2002,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2,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등이 있다.

137)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263-264.

138) *Smorgon & Ors v. FCT & Ors* (1979) 143 CLR 499.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264(1)(b) 참조.

139)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202D. Income Tax Assessment Regulations 1936

업자번호 그리고 투자참조번호(investment reference number)가 포함된다. 또한 소득세법령에서는 투자조직으로 하여금 매년 국세청에 투자소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현황, 투자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투자자에게 지급된 이자, 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sup>140)</sup> 한편 호주 국세청은 정보일치조회프로그램(data-matching program)에 의하여도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sup>141)</sup> 호주 국세청은 최근신용 및 직불카드정보일치조회프로그램(Credit and Debit Card Data Matching Program)에 따라 10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기업체의 신용 및 직불카드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였다.

최근 은행비밀주의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은 금융테러활동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돈세탁 및 테러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2006)을 도입한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은행을 포함한 보고 의무를 지는 기업(reporting entity)들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sup>142)</sup> 기장(record-keeping)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sup>143)</sup> 돈세탁 및 테러 방지 프로그램(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unding program)을 확립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한편,<sup>144)</sup> 특정 정보를 호주 거래기록 및 분석 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보고하여야 한다.<sup>145)</sup> 참고로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Reports Act 1988)에도 이와 유

---

§55. 호주에서는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납세자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4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140) Income Tax Assessment Regulations 1936 §56.

141)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Government Data-matching (<http://oaic.gov.au/privacy/privacy-act/government-data-matching> 2013년 6월 4일 방문).

142)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Part 2.

143)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Part 10.

144)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Part 7.

145)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Part 3.

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돈세탁 및 테러방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 2. 호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1)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

2013년 6월 현재 호주는 44개국과 포괄적인 이중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43개 조약이 발효 중이다.<sup>146)</sup> 각 조약은 체결 당시 가장 최근의 OECD 모델 조세조약에 근거한 정보교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sup>147)</sup> 따라서 2005년 이후에 체결된 조약들과 이전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프로토콜(protocol)에 의하여 개정된 조약들은 2005년 개정된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sup>148)</sup> 소득세법에서는 국세청장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대상 정보가 호주 내국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조세조약에 의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49)</sup>

---

146) 호주는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캐나다(Canada), 칠레(Chile), 중국(China),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피지(Fiji),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헝가리(Hungary),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키리바시(Kiribati), 대한민국(Korea, Republic of), 말레이시아(Malaysia), 몰타(Malta), 멕시코(Mexico),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필리핀(Philippines), 폴란드(Poland), 루마니아(Romania),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바키아(Slovakia), 남아프리카(South Africa), 스페인(Spain), 스리랑카(Sri Lanka),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태국(Thailand), 티모르 레스테(Timor-Leste), 터키(Turkey),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베트남(Vietnam)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칠레 및 터키와의 조약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147) 앞서 언급하였던 대로 이전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의 구문이 2005년에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e relevant...’로 개정되었다.

148) 프로토콜에 의하여 개정된 조약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인도 등과 체결한 조약들이 있다.

149)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ct 1953 §23.

## (2) 조세정보교환협정

호주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38개의 OECD 비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31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왔다.<sup>150)</sup> 호주 국세청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세원(revenue base)을 보호하고 조세체계의 운영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불공정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의 역외활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51)</sup>

[표 2] 호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1	버뮤다(Bermuda)	2005. 11. 10.	2007. 09. 20.
2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2007. 01. 30.	2009. 12. 14.
3	네덜란드령 앤티리스군도 (Netherlands Antilles)	2007. 03. 01.	2008. 04. 04.
4	영국령 버진군도(Virgin Islands, British)	2008. 10. 27.	2010. 04. 12.
5	맨섬(Isle of Man)	2009. 01. 29.	2010. 01. 05.
6	저지(Jersey)	2009. 06. 10.	2010. 01. 05.
7	지브롤터(Gibraltar)	2009. 08. 25.	2009. 08. 25.
8	건지(Guernsey)	2009. 10. 07.	2009. 10. 07.

150) Quigley B., Tracking Change Across the Landscape of Tax, Speech presented to the Tax Institute of Australia 10<sup>th</sup> Annual State Taxes Conference Brisbane, Australia (July 30, 2010).

151)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Overview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00161107.htm> 2013년 6월 4일 방문).

제 3 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9	쿡군도(Cook Islands)	2009. 10. 27.	2009. 10. 27.
10	아루바(Aruba)	2009. 12. 16.	2009. 12. 16.
11	사모아(Samoa)	2009. 12. 16.	2009. 12. 16.
12	산마리노(San Marino)	2010. 03. 04.	2010. 03. 04.
13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2010. 03. 05.	2010. 03. 05.
1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010. 03. 18.	2010. 03. 18.
15	앵귈라(Anguilla)	2010. 03. 20.	2010. 03. 20.
16	케이맨군도(Cayman Islands)	2010. 03. 30.	2010. 03. 30.
17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2010. 03. 30.	2010. 03. 30.
18	그레나다(Grenada)	2010. 03. 30.	2010. 03. 30.
19	바하마(Bahamas)	2010. 03. 30.	2010. 03. 30.
20	터크스 케이커스군도 (Turks and Caicos Islands)	2010. 03. 30.	2010. 03. 30.
21	벨리즈(Belize)	2010. 03. 31.	2010. 03. 31.
22	도미니카(Dominica)	2010. 03. 31.	2010. 03. 31.
23	모나코(Monaco)	2010. 04. 01.	2010. 04. 01.
24	바누아투(Vanuatu)	2010. 04. 21.	2010. 04. 21.
25	마셜 군도(Marshall Islands)	2010. 05. 12.	2010. 05. 12.
26	몬트세라트섬(Montserrat)	2010. 11. 23.	2010. 11. 23.
27	모리셔스(Mauritius)	2010. 12. 08.	2010. 12. 08.
28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2011. 06. 21.	2011. 06. 21.
29	코스타리카(Costa Rica)	2011. 07. 01.	2011. 07. 01.
30	마카오(Macao)	2011. 07. 12.	2011. 07. 12.
31	라이베리아(Liberia)	2011. 08. 11.	2011. 08. 11.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32	안도라(Andorra)	2011. 09. 24.	2012. 12. 03.
33	바레인(Bahrain)	2011. 12. 15.	2012. 12. 15.
34	우루과이(Uruguay)	2012. 12. 10.	미발효

\* 자료: OEC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Australia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taxinformationexchangeagreementstieasaustralia.htm>)

호주에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통하여 27개의 정보교환요청이 이루어졌다.<sup>152)</sup> 이들 요청은 법규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납세자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국외 은닉자산과 채무를 밝혀내는 수단이 되었다. 최근 영국령 버진군도에 대한 정보교환요청에 의하여 3천만 달러 가량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체결된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관련된 일부 사건에서는 협정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sup>153)</sup>

### 제 3 절 네덜란드의 조세정보교환

#### 1. 네덜란드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1) 조세정보보호 관련 일반규정

네덜란드에서는 19세기부터 헌법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왔으며 아울러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sup>154)</sup> 그러므로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법(Wet

<sup>152)</sup> 이 중 17개 요청이 위켄비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

<sup>153)</sup>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dministration of Project Wickenby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Australian Federal Police (Audit Report 25) 37, 2011-12.



bescherming persoonsgegevens: Safeguarding Personal Particulars Act)은 네덜란드 법체계에서 유럽연합법(European Law)을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5)</sup> 이 법에 의하면 네덜란드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personal details)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단체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sup>156)</sup> 이와 같이 네덜란드에서는 비밀주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투명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정부공개법(Wet openbaarheid van bestuur: Transparency by Government Act)이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각 정부기관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보보호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진다. 다만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범죄기록과 같은 개인정보,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세정보의 경우에도 비밀주의가 원칙이나 점차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57)</sup>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자발적 공개의 한 형태인 수평적 감시체제(horizontal monitoring regime)이다. 수평적 감시체제는 상호간 신뢰와 이해, 투명성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 이 제도에 의하여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세문제에 대하여 고지하고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공개할 것에 동의한다. 한편 과세당국은 제공받은 정보에 관하여 현실적인 기한

---

154)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8.

155)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156) 개인정보위원회(Council Safeguarding Personal Particulars)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다.

157) Arjo van Eijdsden, Sanne Verhage, Kristy Jonas, Tax secrecy and tax transparency - the relevance of confidentiality in tax law: The Netherlands, Rust Conference Materials, 2012.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상황에 적합한 조언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다른 예로서 조세행정청(Dutch Tax Administration)은 가산세(tax penalty)를 면제하거나 낮추어주는 조건으로 불법적인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sup>158)</sup>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은 납세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sup>159)</sup>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의무(pledge of secrecy)를 진다.<sup>160)</sup> 이 의무는 네덜란드 조세행정청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모든 자(者)와 기관에 적용된다.<sup>161)</sup> 비밀보장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오직 조세법의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비밀보장은 납세자가 정보제공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조세행정청 직원들 간에도 적용되므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 정보교환이 조세법의 집행이나 세금의 징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해당 정보가 재무부령

158) 재판의 경우 일반행정법(Algemene wet bestuursrecht: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나 특정 행정소송은 판사에 결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의 결과는 공개된다. 반면 조세 관련 소송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재판의 결과는 익명으로 공개한다.

159) 네덜란드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4개의 총국(Directorates-General)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하나가 조세행정총국(Directoraat-Generaal Belastingdienst: Directorate-General Tax Administration)이다. 조세행정총국은 조세법규의 적용과 집행 및 조세행정청에 의하여 적용·집행되는 관세법규 및 비조세법규를 관할한다.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한다.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연방 조세행정청을 의미하고 그 외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 조세행정청이 있다.

160) General Tax Act §67.

161) 이 의무가 세무전문조력자(tax advisor)에게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Ministerial order)의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재무부가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을 허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sup>162)</sup>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납세자 자신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은 납세자나 그의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163)</sup>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과세를 목적으로 조세행정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청 또한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은 네덜란드 공정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이나 사회보장청(Social Services), 지방자치단체, 금융정보조사청(Fiscal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Service) 등에 정보를 제공하며 이 경우 비밀유지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64)</sup> 이는 조세행정청이 다른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와 자금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협약 상대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정보교환의 국내법상 근거가 되는 것이 1986년 조세부과를 위한 국제공조법(International Assistance (Levying of Taxes) Act)에 포함된 국제적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조세부과를 위한 국제공조법상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네덜란드가 체결한 국제협약상 그리고 유럽연합의 정보교환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정보교환의 유형도 OECD 모델 조세

---

162) 이 중 해당 정보가 재무부령의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와 재무부가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을 허용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은 네덜란드 조세행정청과 다른 기관과의 사이에 문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3) 이러한 정보는 주로 세무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이다.

164) General Tax Act Implementation Decree §43에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가 되는 기관들이 규정되어 있다.

조약에서와 같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으로 나누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네덜란드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조약과 다자간 공조지침, 유럽연합 예금지침에 따른 정보교환 의무를 진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유럽연합 내 또는 국제적 정보교환규정에 의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교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sup>165)</sup> 또한 정보의 교환이 네덜란드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이거나 국내법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정보 요청국이 자국 내에서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한 일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정보 요청국이 네덜란드에게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업이나 산업, 전문적 비밀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제공이 국제법과 지역법(interregional law)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교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sup>166)</sup>

이와 같이 네덜란드에서는 국제적 정보교환에 대한 국내법상의 근거가 있는 만큼 정보 요청국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에게 해당 정보교환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기회가 부여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sup>167)</sup> 네덜란드 내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도 국내에서 얻은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유지의 대상이 된다.<sup>168)</sup>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이 제공 받은 정보를 조세 부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조약 체결 상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sup>169)</sup> 네덜란드 조세행정청이

165) International Assistance (Levying Taxes) Act §13 para.1.

166) International Assistance (Levying Taxes) Act §13 para.2.

167) Arjo van Eijdsen, Sanne Verhage, Kristy Jonas, Tax secrecy and tax transparency - the relevance of confidentiality in tax law: The Netherlands, Rust Conference Materials, 2012.

168) International Assistance (Levying Taxes) Act §14 para.1, General Tax Act §67.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조약 체결 상대국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상대국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sup>170)</sup> 재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조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2) 은행에 의한 정보제공

네덜란드에서는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별도의 비밀보장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조세행정청에 제공할 의무를 지고 아울러 조세행정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공할 의무를 진다.<sup>171)</sup> 자발적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예금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투자액, 부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연금(annuity)과 생명보험 등이 포함되며, 이들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조세행정청에 제공되어야 한다.<sup>172)</sup>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의 경우 세무조사자와 은행 간 정보에 관한 규정(Voorschrift informatie fiscus - banken: Regulation on Information between Tax Inspector and Banks)에 의한다. 이 규정은 재무부가 네덜란드 은행연합회(Nederlandse Vereniging van Banken: Dutch Association of Banks)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세행정청과 은행이 제3자의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rules of conduct)을 정한 것으로, 이 규정에는 정보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173)</sup>

169) International Assistance (Levying Taxes) Act §15.

170) International Assistance (Levying Taxes) Act §14.

171) General Tax Act §47 및 §53 para. 2 & 3, Personal Income Tax Act §10.8, Tax Collection Act §62.

172) Personal Income Tax Act Implementation Decree 2001 §22.

173) Voorschrift informatie fiscus/banken dated 28 January 2011, nr. BLKB2011/109M. Arjo van Eijdsen, Sanne Verhage, Kristy Jonas, Tax secrecy and tax transparency -

이 규정에 의하면 조세행정청은 우선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직접 요청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은행에 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요청은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은 이 요청에 응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조세행정청의 관리팀장(chairman of the Management Team)이 문제된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조세행정청은 바로 은행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은 정보제공에 관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은행은 정보요청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세무조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은행이 정당한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팀장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나 계좌보고서 등과 같이 관련 납세자가 알지 못하며 나아가 해당 납세자와 은행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보도 조세행정청의 세무조사를 위하여 제공된다. 조세행정청은 이러한 정보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정보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네덜란드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1) 조세조약

네덜란드는 작은 국내시장규모를 고려한 개방경제정책을 취하고 있어 이중과세와 같이 국제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sup>174)</sup> 이에 2013년 현재까지 92개국

---

the relevance of confidentiality in tax law: The Netherlands, Rust Conference Materials, 2012에서 재인용.

과 조세조약을 체결해왔으며, 이들 대부분은 OECD 모델 조세조약에 근거하고 있다.<sup>175)</sup> 따라서 2005년 개정된 정보교환규정 또한 그 이후 체결된 조세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파키스탄이나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기본적으로 UN 모델 조세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UN 모델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도 원칙적으로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sup>176)</sup>

---

174)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Tax Treaties and APA/ATR Policy, (<http://www.government.nl/issues/taxation/tax-treaties-and-apa-atr-policy> 2013년 5월 30일 방문).

175) 네덜란드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들은 알바니아(Albania),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메니아(Armenia),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바레인(Bahrain),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베이도스(Barbados), 벨로루시(Belarus), 벨기에(Belgium), 버뮤다(Bermuda), BES군도(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Islands), 브라질(Brazil), 불가리아(Bulgaria), 캐나다(Canada), 중국(China), 크로아티아(Croatia),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이집트(Egypt), 에스토니아(Eston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조지아(Georgia), 독일(Germany),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그리스(Greece), 홍콩(Hongkong), 헝가리(Hungary), 아이슬란드(Iceland),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요르단(Jordan), 카자흐스탄(Kazakhstan), 대한민국(Korea, Republic of), 쿠웨이트(Kuwait),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마케도니아(Macedonia), 말라위(Malawi), 말레이시아(Malaysia), 몰타(Malta), 멕시코(Mexico), 몰도바(Moldova), 몽골(Mongolia), 모로코(Morocco), 뉴질랜드(New Zealand), 나이지리아(Nigeria), 노르웨이(Norway), 오만(Oman), 파키스탄(Pakistan), 필리핀(Philippine),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루마니아(Romania), 러시아(Russia Federation),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남아프리카(South Africa), 스페인(Spain), 스리랑카(Sri Lanka), 수리남(Surinam),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대만(Taiwan), 타지키스탄(Tajikistan), 태국(Thailand), 네덜란드령 안틸군도와 아루바(The Netherlands Antilles and Aruba), 튀니지(Tunisia), 터키(Turkey),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구소련(U.S.S.R.: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우간다(Uganda), 우크라이나(Ukrain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베네수엘라(Venezuela), 베트남(Vietnam), 유고슬로비아(Yugoslavia), 잠비아(Zambia), 짐바브웨(Zimbabwe) 등이다.

176) M. Lennard, The UN Model Tax Convention as Compared with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 Current Points of Difference and Recent Developments, Asia-Pacific Tax Bulletin, January/February 2009.

## (2) 조세정보교환협정

네덜란드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조약의 경우와 달리 조세정보교환협정은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3]에서와 같이 네덜란드는 2005년 맨섬(Isle of Man)과 최초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 29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오고 있다.

[표 3] 네덜란드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1	맨섬(Isle of Man)	2005. 10. 12.	2006. 07. 24.
2	저지(Jersey)	2007. 06. 20.	2008. 03. 01.
3	건지(Guernsey)	2008. 04. 25.	2009. 04. 11.
4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2009. 02. 12.	2011. 03. 31.
5	버뮤다(Bermuda)	2009. 06. 08.	2010. 02. 01.
6	케이맨군도도(Cayman Islands)	2009. 07. 08.	2009. 12. 29.
7	앙귤라(Anguilla)	2009. 07. 22.	2011. 05. 01.
8	터크스 케이커스군도 (Turks and Caicos Islands)	2009. 07. 22.	2011. 05. 01.
9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009. 09. 01.	2011. 03. 21.
10	세인트키츠네비스 (Saint Kitts and Nevis)	2009. 09. 02.	2010. 11. 29.
11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2009. 09. 02.	2010. 03. 01.
12	영국령 버진군도 (Virgin Islands, British)	2009. 09. 11.	미발효



제 3 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13	사모아(Samoa)	2009. 09. 14.	2012. 03. 02.
14	쿡군도(Cook Islands)	2009. 10. 23.	2011. 09. 07.
15	안도라(Andorra)	2009. 11. 06.	2011. 01. 01.
16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2009. 11. 10.	2010. 12. 01.
17	바하마(Bahamas)	2009. 12. 04.	2010. 12. 01.
18	몬트세라트 (Montserrat)	2009. 12. 10.	2011. 12. 01.
19	모나코(Monaco)	2010. 01. 11.	2010. 12. 01.
20	산마리노(San Marino)	2010. 01. 27.	2011. 01. 01.
21	벨리즈(Belize)	2010. 02. 04.	2011. 01. 01.
22	그레나다(Grenada)	2010. 02. 18.	2012. 01. 20.
23	지브롤터(Gibraltar)	2010. 04. 23.	2011. 12. 01.
24	도미니카(Dominica)	2010. 05. 11.	2012. 03. 01.
25	마셜군도(Marshall Islands)	2010. 05. 14.	2011. 11. 08.
26	라이베리아(Liberia)	2010. 05. 27.	2012. 06. 01.
27	세이셸(Seychelles)	2010. 08. 04.	2012. 09. 01.
28	코스타리카(Costa Rica)	2011. 03. 29.	2012. 07. 01.
29	우루과이(Uruguay)	2012. 10. 27.	미발효

\* 자료: OEC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Netherlands

(<http://www.eoi-tax.org/jurisdictions/NL#agreements>)

(3) 유럽연합 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네덜란드는 유럽평의회와 OECD가 함께 초안을 마련한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1996년에 비준하였으며 본 협약은 1997년부터 네덜란드에 적용되었다. 2010년 네덜란드는 OECD와 유럽연합의 비회원국도 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도 비준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많은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해왔기 때문에 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비준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sup>177)</sup>

이 외에도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1979년부터 다자간 공조지침(Mutual Assistance Directives)을 적용하고 있다.<sup>178)</sup> 다자간 공조지침은 납세자의 납세의무(fiscal obligation)를 결정하고 국제적인 탈세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후 이 지침은 1992년과 2004년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건강보험료(social insurance contribution)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예금지침(Savings Directives)에 의하여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국제적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4 절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

### 1. 우리나라 국내법상 조세정보 관련 규정

#### (1) 조세정보보호 관련 일반규정

우리나라에서의 정보보호와 정보공개는 모두 헌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의 경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177) A.C.G.A.C. de Graaf, P. Kavelaars and A.J.A. Stevens, Internationaal belastingrecht, Deventer: Kluwer, 2011, p. 402. Arjo van Eijdsen, Sanne Verhage, Kristy Jonas, Tax secrecy and tax transparency - the relevance of confidentiality in tax law: The Netherlands, Rust Conference Materials, 2012에서 재인용.

178) EC Directive of 19 December 1977, No. 77/779.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정보보호의 경우에도 역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알권리가 그 근거가 된다.<sup>179)</sup> 조세정보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sup>180)</sup> 1996년에 도입된 이 비밀유지에 관한 조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81)</sup>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나 국가기관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82)</sup> 세무공무원이 법에 위반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sup>183)</sup> 조세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비롯하여 국세징수법,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법상 보고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조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들 수 있다.<sup>184)</sup>

국제적 조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2002년 12월 과거 형식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마련되어 있었던 정보교환규정을 실질적으로

---

179) 헌법 제17조 및 제21조 제1항.

180) 일반 정보의 비밀유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18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과세정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제도의 설명에 있어서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과세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8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및 제3항.

18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

184)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정기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개인과세정보의 국회공개에 대한 법적 논쟁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현진권, 개별과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하나?: 현안과 정책방향, 조세학술논문집 제21집 제2호, 2005, 104쪽.

로 보완함으로써, 조세조약에 정보교환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관련 정보를 계약 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85)</sup> 이에 의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 계약 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sup>186)</sup>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은 계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특정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sup>187)</sup>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금융정보는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하는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sup>188)</sup> 한편 상호주의에 의하여 계약 상대국의 법령 또는 행정관행상 계약 상대국이 우리 정부에게도 같은 유형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해당 계약상대국이 요청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sup>189)</sup> 나아가 이러한 상호주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계약상대국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18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18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2010년 1월 개정에 의하여 동 조항의 금융정보 교환 대상이 되는 자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외에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추가되었다. 이는 OECD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법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홍범교·한상국, 국제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제9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126쪽.

1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1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체약 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up>190)</sup>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 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도록 수 있으며, 반대로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반드시 체약 상대국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 (2) 은행비밀주의

개인의 금융정보는 은행과 고객 간 계약에 의한 사법적 관점,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권 보호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특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세의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sup>191)</sup> 나아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up>192)</sup> 이 경우 제출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up>193)</sup>

---

19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19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19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9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3) 해외계좌신고제도

우리나라의 해외계좌신고제도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과세연도 중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해당 금융계좌의 정보를 그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sup>194)</sup>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와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며, 이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중 현금과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sup>195)</sup>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96)</sup> 다만 국세기본법상 인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97)</sup>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미신고 금액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sup>198)</sup>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조세피난처 등 상대방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대방 국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이 금융정보를 수집 가능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19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

19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제2항.

1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1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19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및 제35조.

가질 수 있다. 조세피난처 또는 역외금융센터에 관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있더라도 해외은닉재산의 신고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도 도입 후 30여 년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비율이 저조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는 수가 늘어났고, 금융정보를 과세당국이 얻게 된 2008년 이후 시점부터 동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받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등도 해외은행계좌가 있는 개인 자산가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이와 유사한 자발적 공개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sup>199)</sup>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첫 신고결과 개인 211명(9,756억원), 법인 314개(10조 5,063억원)가 신고되었으며, 국세청은 신고의무 불이행 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와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였다.<sup>200)</sup>

##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약

### (1) 조세조약상 정보교환규정

2013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8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체결된 모든 조세조약들이 정보교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sup>201)</sup> 그러나

---

199) OECD는 각국의 경험을 비교 검토하는 문서를 2010년 10월 공표하였다. OECD,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Comparative Analysis, Guidance and Policy Advice, 2010.

200) 기획재정부, 국제적 조세정보교환 동향과 미국의 FATCA, 2011.

201)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미국(United States), 벨기에(Belgium), 덴마크(Denmark), 네덜란드(Netherlands),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싱가포르(Singapore), 스웨덴(Sweden), 뉴질랜드(New Zealand), 말레이시아(Malaysia), 호주(Australia), 노르웨이(Norway), 방글라데시(Bangladesh), 터키(Turkey), 필리핀(Philippine), 스리랑카(Sri Lanka), 룩셈부르크(Luxembourg), 인도(India), 오스트리아(Austria), 파키스탄(Pakistan), 튀니지(Tunis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탈리아(Italy), 브라질(Brazil), 헝가리(Hungary), 아일랜드(Islands), 폴란드(Poland), 몽골(Mongol), 체코(Czech Republic), 러시아(Russia), 이집트(Egypt), 루마니아(Rumania), 스페인(Spanish), 불가리아(Bulgaria), 중국(China), 베트남(Vietnam), 피지(Fiji), 멕시코(Mexico), 포르투갈(Portugal), 그리스(Greece) 남아프리카

이들 조약 중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아니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2005년에 추가된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캐나다(2006년 9월 5일 서명, 2006년 12월 18일 발효), 파나마(2010년 10월 20일 서명, 2012년 4월 1일 발효), 스위스(2010년 12월 28일 개정의정서 서명, 2010년 7월 25일 개정의정서 발효), 우루과이(2011년 11월 29일 서명, 2013년 1월 22일 발효), 바레인(2012년 5월 1일 서명, 2013년 4월 26일 발효) 등과의 조세조약이며 아제르바이잔(2008년 5월 19일 서명, 2008년 11월 25일 발효)과의 조약에는 네 번째 문단만이 반영되어 있다. 어떠한 조약도 2012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특이한 것은 2012년 개정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에는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하여 양국 과세당국이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02)</sup>

## (2) 조세정보교환협정

우리나라의 경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3개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되어 있다. 2개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

---

공화국(South Africa), 영국(United Kingdom),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이스라엘(Israel), 몰타(Malta), 카자흐스탄(Kazakh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일본(Japan), 모로코(Morocco), 우크라이나(Ukraine), 쿠웨이트(Kuwait), 독일(Germany), 슬로바키아(Slovakia), 네팔(Nepal), 알제리(Algeria), 미얀마(Myanmar), 칠레(Chile), 벨로루시(Belarus), 크로아티아(Croatia),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요르단(Jordan), 라오스(Laos), 슬로베니아(Slovenia), 오만(Oman), 리투아니아(Lithuania), 알바니아(Albania), 베네수엘라(Venezuela), 이란(Iran), 캐나다(Canada), 태국(Thailand),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카타르(Qatar), 아이슬란드(Iceland), 아제르바이잔(Azerbaijani Republic), 라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 파나마(Panama), 스위스(Switzerland), 우루과이(Uruguay), 바레인(Bahrain) 등 8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보도자료: 한국·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25일 발효 (2012년 7월 12일자) (<http://www.mof.go.kr/news/news01.jsp?actionType=view&runno=4014144> 2013년 7월 12일 방문).



제 3 장 주요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규정

정은 현재 미발효 상태이며 12개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가  
서명 상태에 있다.<sup>203)</sup>

[표 4]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체약상대국	서명일	발효일
1	쿡군도(Cook Islands)	2011. 05. 31.	2012. 03. 05.
2	마셜군도(Marshall Islands)	2011. 05. 31.	2012. 03. 09.
3	바하마(Bahamas)	2011. 08. 04.	2013. 07. 15.
4	버뮤다(Bermuda)	2012. 01. 23.	미발효
5	바누아투(Vanuatu)	2012. 03. 14.	미발효

\*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2013년 7월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  
환협정 체결 현황 (2013년 7월 23일자)

(<http://www.mosf.go.kr/policy/policy03.jsp?actionType=view&runno=4017837>)

203) 가서명국들은 사모아(Samoa, 가서명일: 2009. 09. 01.), 건지(Guernsey, 가서명일: 2010. 01. 27.), 케이맨군도(Cayman Islands, 가서명일: 2010. 03. 25.), 라이베리아(Liberia, 가서명일: 2010. 06. 17.),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가서명일: 2010. 07. 14.), 저지(Jersey, 가서명일: 2010. 09. 17.), 앙귤라(Anguilla, 가서명일: 2010. 11. 13.), 코스타리카(Costa Rica, 가서명일: 2011. 02. 01.), 영국령 버진군도(British Virgin Islands, 가서명일: 2011. 05. 24.), 안도라(Andorra, 가서명일: 2012. 04. 3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가서명일: 2012. 10. 26.), 지브롤터(Gibraltar, 가서명일: 2012. 12. 10.)이다.

## 제 4 장 결 론

최근 해외재산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관련 협약의 체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제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OECD 글로벌포럼은 효과적인 조세정보교환을 위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6조 정보교환 규정과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개정을 이끌고 있다.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자국이 체결한 관련 협약에 상당부분 반영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에서도 개정 내용의 반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체결도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체결한 조세조약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보교환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양 당사국들의 조세행정과 국내세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04)</sup>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정보교환관련 규정과 국내법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과의 충돌이다. 특히 미국의 FATCA의 경우 많은 국가들의 정보보호관련 규정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은 별도의 정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직접적

204)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2006. p.4.

#### 제4장 결론

인 정보제공이 아닌 정부 간 정부교환이 되도록 하고 있다.<sup>205)</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FATCA는 금융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 관련 국내법과 충돌하고 있다. 또한 FATCA에 의한 금융정보제공은 국내법에 따른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보고절차와 중복되는 것으로 대상 금융기관의 협력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세정보의 상호주의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과다한 협력비용이 초래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관련 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5) 현재까지 케이만군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스위스 등이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유찬, 국제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7집 제1호, 2011.
- 이경근·서덕원·김범준,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1.
-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1.
-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3,
- 현진권, 개별과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하나?: 현안과 정책 방향, 조세학술논문집 제21집 제2호, 2005.
- 홍범교·한상국, 국제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제9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무학회, 2010.

### 외국문헌

- Arjo van Eijdsden, Sanne Verhage, Kristy Jonas, Tax secrecy and tax transparency - the relevance of confidentiality in tax law: The Netherlands, Rust Conference Materials, 2012.
- Arthur J. Cockfield, Protecting Taxpayer Privacy Rights under Enhanced Cross-border Tax Information Exchange: Toward a Multilateral

참 고 문 헌

- Taxpayer Bill of Right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Review, Vol. 42, 2010.
-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dministration of Project Wickenby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ustralian Crime Commission, Australian Federal Police (Audit Report 25), 2011-12.
-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rgeting Tax Crime -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Issue 1-4, 2009.
- Kathrin Bain, Tax Secrecy and Tax Transparency: the Relevance of Confidentiality in Tax Law: Australia, Rust Conference Materials, 2012.
- Latimer P., Bank Secrecy and Confidentiality Law in Practice in Australia and Their Impact on the Control of Economic Crime, 14(3)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51, 1996.
- M. Lennard, The UN Model Tax Convention as Compared with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 Current Points of Difference and Recent Developments, Asia-Pacific Tax Bulletin, January/February 2009.
- Michael Keen and Jenny E. Ligthart,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national Taxation, Center Discussion Paper No. 2004-117, 2004.
-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1998.
- OECD,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2000.
- OECD,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Exchange of Information Provisions for Tax Purposes, OECD, 2006.

OECD,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Comparative Analysis, Guidance and Policy Advice, 2010.

OECD,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TIN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C(1997)39/FINAL), 1997.

OECD, Update to Article 26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y, OECD Council, 2012.

## 참고사이트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www.ato.gov.au>

Business IFC <http://www.businessifc.com>

Exchange of Tax Information Portal <http://www.eoi-tax.org>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http://www.government.nl>

HM Revenue and Customs <http://www.hmrc.gov.uk>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www.irs.gov>

OECD <http://oecd.org>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http://oaic.gov.au/>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기획재정부 <http://mosf.go.kr>

외교통상부 <http://mofa.go.kr>